

#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서울시 공무원 복무지침 강화 시행(변경)

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행정안전부 「지방공무원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복무지침」 보다 강화된 「서울시 공무원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복무지침」 을 시행하고자 함

- 「서울시 공무원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복무지침」 주요 변경 내용
  - 체육문화행사, 워크숍, 부서 회식 등 집단행사 **별도 안내 전까지 중지**
    - ※ 교육은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경우 마스크,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
  - 서울시 **집합금지 명령 대상 시설**(클럽, 감성주점, 콜라텍,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 포함) **출입자 엄중 문책**

구 분	[기존] 행정안전부 「지방공무원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복무지침」	[강화] 「서울시 공무원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복무지침」
업무수행 관 련	[집단행사] 가급적 연기 또는 취소	<강화> 체육문화행사, 부서 회식, 워크숍 <b>별도 안내 전까지 중지</b>
	[내·외부 회의 및 보고] 가급적 영상·전화·서면을 활용	현행 유지
	[국내외 출장] 연기 또는 취소하되 불가피한 경우 출장인원 최소화	"
복무 관련 유의 사항	[집합금지 명령 대상 시설 출입자 엄중 문책]	<강화>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 대상 시설 (클럽, 감성주점, 콜라텍,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 및 <b>코인노래 연습장</b> ) <b>출입자 엄중 문책</b>
	[자진신고] 확진자와 접촉, 여행경보 국가 방문, 38℃이상 고열 지속, <b>최근 이태원 클럽 등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 즉시 소속기관에 자진신고</b> ※ 위반시 엄중 문책	현행 유지
	[유증상자]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,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날 시 즉시 퇴근	"
	[확진환자] 격리·치료기간 '병가', 치료종료 다음날부터 14일간 '재택근무' 원칙	"
	[동거가족이 확진자 또는 격리자] 격리해제일까지 '공가', 가족이 격리자인 경우 '재택근무' 및 격리해제된 다음날부터 출근 가능	"
	[개인 외출 및 사적모임] 가급적 자제 및 연기·취소	"
유연근무	[시차출퇴근제] 적극 활용	"
	[재택근무] 적정 비율(예, 3분의 1) 실시	"
	[점심시간] 시차 운영	"